



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 의무에 관한 규정

1. 학부생 (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 제43조(졸업요건)
-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
(편입·재입학생 포함)

※ 건축학과(5년제), 의학과(6년제)의 경우도 4회만 이수 필수

2. 일반 대학원생 (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-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(석사학위 논문 제출자격), 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)에 따라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 전에 이수해야 함